

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 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시체를 직접 해부할 수 있는 사람과 이들의 지도 하에 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(안 제2조제2호).
-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 시체해부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, 시체 해부를 할 수 있는 사람, 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시체 해부 및 시체표본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(안 제2조의2·제16조제3항 신설).
- 이 법에 따른 가족·유족의 범위 및 시체 해부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은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하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.
-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·보존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기관은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해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의4제1항).
- 보건복지부장관은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매년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집·보존 및 이용 현황, 제공받은 연구자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,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·보존·이용 및

연구 목적의 제공 등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간 협력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·관리하도록 함(안 제9조의8제2호 및 제9조의10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교육에 필요한 기증 시신이 부족한 의과대학에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은 타 의과대학 또는 종합병원에서 수집·보존 중인 시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시체 해부 및 시체 제공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.
- 현행 「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시체해부법”)은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¹⁾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, 개정안은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²⁾할 수 있음을 추가하면서 시체 제공의 목적 및 범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항을 구분하여 그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건
제9조의4(연구를 위한 시체의 <u>제공</u>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·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 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<u>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집·보 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 공할 수 있다. 이 경우, 제9조의2에 따 른 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를 제외 하고는 제9조제2항 단서의 목적으로 의</u>	제9조의4(<u>교육 및 연구</u> 를 위한 시체의 제공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공할 수 있다. <후단 삭제>

개 정 안	수 정 의 전
<u>과대학에만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.</u> 1. 의과대학 2. 「의료법」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(이하 “종합병원”이라 한다) <신 설>	1. ·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기관은 수집·보존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. 1. 제9조제2항²⁾ 단서에 따라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 2. 제9조의2¹⁾에 따른 연구를 위하여 연구자에게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경우

○ 또한, 개정안이 시체 제공의 목적과 범위를 확대하였으므로 법체계상 이에 상응하는 제재규정의 검토가 필요함.

-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을 보완³⁾하였으나,
-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는 허가 시 부과된 의무의 위반에 대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, 현행법의 요건⁴⁾에 추가하여 개정안에 따른 제공

- 1) 시체해부법 제9조의2(시체의 일부를 이용한 연구의 심의) 시체의 일부(시체로부터 분리된 산물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(이하 “기관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
 - 2) 안 제9조(인체의 구조 연구를 위한 해부) ② 제1항에 따른 시체 해부는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다만,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과 관련한 시체 해부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3) 안 제10조(시체의 관리)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,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·이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19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5.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·이용하거나 양도한 자

목적 및 범위를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,

- 과태료에 대해서도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로서 형벌 부과 이전에 의무이행을 확보할 수 있고, 현행법 상 과태료⁵⁾ 부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부과기준⁶⁾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허용된 목적 및 범위를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음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제9조의5(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	제9조의5(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 ① (개정안과 같음)

- 4) **시체해부법 제9조의5(허가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)**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일부의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
1.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
 2. 제9조의4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 내용을 변경한 경우
 3.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허가 기준 또는 변경허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
 4. 제9조의6제2항 및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
 5.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6.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·질문·수거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- 5) **시체해부법 제21조(과태료)**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
 - 1의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
 - 1의3. 제9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익명화 방안이 포함된 식별정보 보호 지침을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식별정보 관리 및 보안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
 2.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
 3. 제17조를 위반한 자
 4. 제1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·검사·질문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
-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부과·징수한다.
- 6) 「**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**」 제8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개 정 안	수 정 의 견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체의 <u>전부 또는 일부의</u> 제공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1. (생 략) <신 설> 2. ~ 6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 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3. ~ 7. (개정안 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)
제21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<신 설> 1의2. ~ 1의5. (생 략)	제21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. 1. (개정안과 같음) 1의2.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제공한 경우 1의3. ~ 1의6. (현행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와 같음)

○ 그 밖에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이며, 자세한 수정사항은 주서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전문위원 박 혜 진)